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민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81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최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춘선,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원형, 이은림, 이희원,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진혁, 홍국표 의원(32
명)

1. 제안이유

- 최근 급격히 증가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 이용으로 공유 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에 따른 무질서한 방치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방해받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특히,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의 통행에도 장애를 초래하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 및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조치에 따른 비용을 소유자나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 나.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 다.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4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p>
<p><신 설></p>	<p>제15조(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신 설></p>	<p>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14조 (생략)</p>	<p>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무단방치 금지), 제15조(무단장치 처분) 및 제16조(권한의 위임)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